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58)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5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5060)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개요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1.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
2.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 결산제도 도입(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3.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I. 개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

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

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예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생략) <신설> ※ 관련 조문 「장애평등정책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평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장애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신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장애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장애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장애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장애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효과분석

④ 그 밖에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장애인지 예산서

8.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6. (생략) ② ~ ⑧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u> <u>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u> <u>서 및 장애인지 결산서</u>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서 및 2027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¹⁾.

2024. 6. 19.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은 국가

1)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의 편성·집행,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며,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²⁾,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로 성인지예산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³⁾

성인지예산 제도의 사례를 고려할 때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지 예산서가 도입되는 경우 장애인지 예산서에는 대상 사업의 대상자인 장애인

2) 「장애평등정책법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20065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집행,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障礙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회계와 대상 사업을 정하고, 대상 사업에 대해 성별 수혜분석 분석(사업대상자의 남성·여성 비율과 사업의 수혜를 받은 남성·여성 비율 분석), 성별격차의 원인 분석 및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참고자료 참조)

과 비장애인의 비율과 사업수혜 비율, 장애인·비장애인의 격차의 원인 분석, 장애평등 기대효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에는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여 명) 대비 5.1%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지방재정 분야에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의 재분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 천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494	2,490	2,511	2,546	2,585	2,618	2,632	2,642	2,643	2,633
지체장애	1,296	1,281	1,267	1,254	1,238	1,223	1,207	1,191	1,173	1,151
시각장애	253	253	252	253	252	253	252	251	250	247
청각,언어	271	269	291	322	363	398	418	434	446	454
지적장애	184	190	195	201	206	212	217	221	225	229
뇌병변장애	251	251	251	253	253	252	250	247	242	237
자폐성장애	20	21	23	24	26	28	30	33	37	42
정신장애	97	99	100	101	102	102	103	104	104	103
신장장애	70	74	79	84	87	92	97	102	105	107
심장장애	6	6	6	6	5	5	5	5	5	4
호흡기장애	12	12	12	12	11	11	11	11	11	10
간장애	10	10	11	11	12	13	13	14	15	15
안면장애	3	3	3	3	2	2	2	2	2	2
장루,요루장애	14	14	14	15	15	15	15	16	16	17
뇌전증장애	7	7	7	7	7	7	7	7	7	6

※ 자료 : 지표누리 e-나라지표(장애인 현황)

〈장애정도별 장애인 수〉

(단위 : 천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618	2,632	2,642	2,643	2,633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985	984	983	977	9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633	1,648	1,659	1,665	1,662

※ 자료 : 국가통계포털(장애정도별 장애인 현황)

특히, 이는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⁵⁾하고 2009년부터 발효⁶⁾된 국제연합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일반의무) 제1항 다목⁷⁾에서 정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애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이 선행하여 또는 함께 의결될 필요가 있음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5) 국회는 2008년 12월 2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 비준을 동의함.

6)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발효일: 2009. 1. 10.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권리협약 소개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4 조

일 반 의 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 자. (생략)

8) 2025.2 기준, 「장애평등정책법안」은 2024년 8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도입은 국가의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⁹⁾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장애평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근거법인 「장애평등정책법안」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국가재정에 이를 우선 도입 후 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65, 2024.10.30.발의, 2025.2 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상정

참고**성인지예산서 중 성별 수혜분석 등 부분 예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서 중 성별 수혜분석 등 부분(예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66,708	7,137,840	9,659,322
여성	312,695(55.2%)	3,641,579(51%)	4,994,422(51.7%)
남성	254,013(44.8%)	3,496,261(49%)	4,664,900(48.3%)

※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통계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2023년 6월)

☐ 사업수혜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75	509	462
여성	259(45%)	241(47.3%)	210(45.5%)
남성	316(55%)	268(52.7%)	252(54.5%)

☐ 예산구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172	1,728	1,800
여성	978(45%)	818(47.3%)	818(45.5%)
남성	1,194(55%)	910(52.7%)	982(54.5%)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아내가 한다는 응답은 70.5%로 나타남.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은 26.6%, 남편이 한다는 비율은 2.8%로 나타남. 이는 노령층에서도 비율의 차이지만 비슷한 패턴일 것으로 추측됨. 결론적으로 남성의 경우 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의 부재를 겪을 수 있어 본 서비스에 참여자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 **성평등 기대효과**

- ☐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적 돌봄 확대

※ 자료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서 353면·354면

2. 장애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결산서”라 함)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2.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장애인지 결산서</u> 5.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장애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장애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장애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함)와 기금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장애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의5(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

	<u>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장애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337